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운영지침

[제정 2019.01.01.]
[개정 2020.03.25.]
[개정 2021.03.24.]
[개정 2022.02.23.]
[개정 2022.03.30.]

제1조(정의)

"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이하 "산학프로젝트" 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산업체가 직면한 문제 혹은 학생들이 도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수와 학생 및 산업체가 팀을 이루어 해결하고 성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실무적인 SW 및 제품 개발과정을 경험하고 산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1. 산학프로젝트는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 5개 참여학과(컴퓨터공학부, 게임공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부, 정보보호학과, AI학부) 및 SW연계전공학과 소속 교원이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단의 참여학과 및 연계전공 재학생 및 대학원생이 팀원이 될 수 있으며 산업체 전문가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제3조(산학프로젝트의 구성 및 운영)

산학프로젝트 팀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으며 효율적인 산학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단에서 총괄 관리한다.

1. 팀 구성
   - 구성인원 : 학생 2~7명(팀 리더 1명), 지도교수 1~2명, 산업체 전문가 1명
   - 산업체 재직자 : 산업체 경력 2년 이상의 졸업생 선배 또는 산업체 전문가
   - 과제책임자 : 지도교수 中 1명
2. 팀 운영 방법
   - 각 팀의 산학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
   - 산업체 재직자로부터 온라인 · 오프라인으로 스터디 지도

제4조(연구비 산정기준)

산학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1. 산학프로젝트는 자유과제, 지정과제, 국외과제 3가지로 구분한다.
2. 산학프로젝트 종류별로 자유과제는 3백만원, 5백만원, 지정과제는 1천만원, 국외과제는 2천만원까지 최대한도로 지급한다.

제5조(산학프로젝트 신청방법)

1. 산학프로젝트는 SW관련 회사, IT기업, 사업단 참여학과 및 연계전공 학과 교수, 학생이 포함된 연구에 한하여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2. 산학프로젝트 신청자는 연구 수행 계획서외 사업단에서 지정한 신청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 사업단에 제출한다.

제6조(평가 절차)

1. 평가위원은 3인으로 구성한다.
2. 사업단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사업단장이 선정한다.
3. 평가방법은 자유과제, 지정과제, 국외과제별로 평가한다.
4. 각 과제별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하지 아니한다.
5. 지정과제 중에서 선정된 과제 수가 목표보다 미달 될 경우 부족한 과제 수는 자유과제에서 보충할 수 있고, 지정과제 신청 개수가 목표보다 초과될 경우 선정되지 못한 과제는 자동으로 자유과제와 동일한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산학프로젝트의 선정 및 집행)

1. 산학프로젝트 선정은 사업단에서 지정한 평가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연구비 집행은 사업단의 사업비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2. ~~외부 자문료는 시간당 최대 10만원을 넘지 아니하며, 자유과제는 1회 3시간 최대 2회, 지정과제 및 국외과제는 1회 3시간 최대 3회까지 자문할 수 있다.~~(2022.03.30. 삭제) 기업체 멘토링(자유, 지정, 국외과제) 자문료는 월 최대 20만원(월 200,000원 * 6개월) 넘지 아니하며 산학프로젝트를 제외한 6개월 이상의 특별 프로젝트에 한해서 SW중심대학 단장 승인에 따라 자문 횟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3. 산학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연구비의 집행은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산학프로젝트 개발 내용으로 한다.
4. 과제를 완료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마일리지 3점을 부여한다.

제8조(결과물 제출 및 완료)

1. ~~자유과제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 기간 종료 전까지 HTP 제출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2022.03.30. 삭제)
2. ~~지정과제 및 국외과제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 기간 종료 전까지 HTP 제출용 결과보고서와 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2022.03.30. 삭제)
3. ~~지정과제 및 국외과제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 기간 종료 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논문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지의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2022.03.30. 삭제)
4.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과제 혹은 국외과제를 수행하고 제8조 3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리고 허위로 보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2년간 신청 제한 및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22.03.30. 삭제)
5. 과제 결과물이 S/W일 경우 저장매체(DVD, USB)에 저장하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물이 H/W일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6. 각 프로젝트 관리자는 팀마다 소모재료불출대장을 비치하고 재료 소진에 대한 내역을 품목별로

상세히 기재 하여야 하며,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소모재료불출대장과 남은 재료를 사업단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7. 각 프로젝트별 제출목록

구분	최대 지원금	물품관리대장	보고서	논문발표	특허
자유과제 I	5,000,000원	O	O	O	X
자유과제 II	3,000,000원	O	O	X	X
지정과제	10,000,000원	O	O	O	O

가. 자유과제 I

1) IITP 제출용 결과보고서
2) 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융합작품전시회참가신청서 1부
3) 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물품관리대장
4) 논문발표(발표논문 사본 제출)

나. 자유과제 II

1) IITP 제출용 결과보고서[공통] 1부
2) 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융합작품전시회참가신청서 1부
3) 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물품관리대장

다. 지정과제

1) IITP 제출용 결과보고서[공통] 1부
2) 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결과보고서 1부
3) 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융합작품전시회참가신청서 1부
4) 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물품관리대장
5) 논문발표(발표논문 사본 제출)
6) 특허신청 발급 서류

제9조(결과물 활용)

1. 과제 결과물이 S/W일 경우 저장매체(DVD, USB)에 저장하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물이 H/W일 경우 결과보고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8조 5항 이동)
2. 모든 산학프로젝트 팀은 교내 융합작품전시회에 필수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시회에 사용할 팜플렛 이미지 작업 결과물을 전시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융합작품전시회 기간 동안 산학프로젝트 팀은 전시회 일정을 소화하여야 한다.
4. 각 프로젝트 관리자는 팀마다 소모재료불출대장을 비치하고 재료 소진에 대한 내역을 품목별로 상세히 기재 하여야 하며,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소모재료불출대장과 남은 재료를 사업단으로 반납하여야 한다.(8조 6항 이동)

제10조(기타사항)

1. 연구비 사용 시 사업단의 내부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한다(건별 집행).
2. 산학프로젝트 결과물을 논문으로 제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사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한글표기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SW중심대학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나)영문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MISP(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Korea, under the National Program for Excellence in SW) supervised by the IITP(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romotion)(과제번호)”

3.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프로젝트 연구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여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다.
4.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과제 진행 중 구성원 변경 발생 시 참여인력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산학프로젝트 연구책임자는 사업단에서 지정한 기한에 산학프로젝트를 완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과제 종료 30일 전까지 사전에 사업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과제 진행 중 과제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제명 변경신청서를 사업단에 제출하고 사업운영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이 가능하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0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1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2년 0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2022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첨 부

1.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IITP 제출용 결과보고서[공통] 1부(별지 제5호 서식)
6.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결과보고서[지정과제,국외과제](별지 제6호 서식)
7.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재료비 구입 신청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8.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회의비 신청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9.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회의록(별지 제9호 서식)
10.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참석자 명단 1부(별지 제10호 서식)
11.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12.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자문료(위원수당 등) 청구서(별지 제12호 서식)
13.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자문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
14.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학술대회참가지원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15.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학생출장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16.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학생결과보고서(별지 제16호 서식)
17.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물품 검수조서(별지 제17호 서식)
18.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참여인력변경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
19.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과제명변경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20.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융합작품전시회참가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21.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물품관리대장(별지 제21호 서식)
22.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 선정 평가표(별지 제22호 서식)